

제재위원회 규정

목 차

제1조(근거 및 명칭)	1
제2조(목적)	1
제3조(기능)	1
제4조(독립성·공정성)	1
제5조(구성)	1
제6조(임원의 임기 등)	1
제7조(절차의 개시)	1
제8조(제재위원의 선정)	1
제9조(청문의 일시와 장소)	2
제10조(청문절차의 협조)	2
제11조(정보의 비공개)	2
제12조(청문기일예의 출석 등)	2
제13조(청문의 진행 등)	2
제14조(결정)	2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2
부칙	2

제재위원회 규정

- 제 정 2018. 8. 1.
- 개 정 2019. 12. 9.
- 개 정 2020. 2. 27.
- 개 정 2020. 12. 18.

제1조(근거 및 명칭)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정관 제37조의3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며, 그 명칭은 제재위원회라 칭한다. <개정 2020.12.18>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가 세계도핑방지규약 제8조 및 한국도핑방지규정 제8조, 프로스포츠도핑방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도핑방지규정 또는 프로스포츠도핑방지규정 위반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한 공정한 청문과 결정을 위하여 독립적인 제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8>

제3조(기능) ①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이하 ‘선수 등’ 이라 한다)가 한국도핑방지규정 또는 프로스포츠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한 공정한 청문과 결정을 해야 한다.

② 제재위원회는 위원회가 선수 등에게 한국도핑방지규정 또는 프로스포츠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통지한 사건에 대하여 청문을 진행하고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18.>

1. 선수 등이 청문을 포기한 경우
2. 선수 등이 위원회의 통지에 적힌 구체적인 시간 내에 혐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제4조(독립성 · 공정성) 제재위원회는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개정 2020.12.18.>

제5조(구성) ① 제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18.>

② 위원은 5년 이상 경력의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과학전문가, 스포츠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로서 공정하고 공평하며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2.27>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되어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절차의 개시) 청문절차는 위원회가 선수 등에게 한국도핑방지규정 또는 프로스포츠도핑방지규정 위반 혐의를 통지하였으나 제3조 제2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재위

원회에 사건을 이송한 때로부터 시작된다. <개정 2020.12.18.>

제8조(제재위원의 선정) ① 위원장은 전조에 따라 이송된 사건(이하 ‘청문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청문과 결정을 위하여 1명 또는 3명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할 수 있다)을 제재위원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0.12.18.>

② 전항에 따라 선정되는 제재위원에게는 청문사건에 관하여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만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20.12.18.>

③ 제1항에 따른 선정 시 제재위원은 청문사건에 관하여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만한 사유가 없음을 서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8.>

④ 위원회 사무국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청문위원의 명단을 지체 없이 선수 등에게 통지한다.

제9조(청문의 일시와 장소) ① 청문의 일시, 장소와 방식은 제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0.12.18.>

② 제재위원회는 전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절차상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2.18.>

③ 위원회 사무국은 제1항의 결정을 지체 없이 선수 등에게 통지한다.

제10조(청문절차의 협조) 위원회 사무국은 제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녹음, 청문을 위한 공간 기타 청문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제11조(정보의 비공개) ① 청문사건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재위원은 청문사건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18.>

제12조(청문기일에의 출석 등) ① 선수 등, 위원회는 청문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② 선수 등의 국내경기단체, 세계도핑방지기구는 입회인으로 청문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③ 제재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선수 등, 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청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청문절차가 지연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18.>

④ 선수 등,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수 등, 위원회의 출석 없이 청문을 진행하여 제출된 서면 및 증거를 기초로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청문의 진행 등)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어 청문을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제재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인 제재위원이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2.18.>

② 선수 등, 위원회는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재위원은 선수 등, 위원회에게 질문하거나 증거제출을 요청하는 등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④ 의장은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결정) ① 청문 종결 직후 청문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결정하고, 결정날짜, 결정사항 및 결정이유가 포함된 결정서를 작성한다.

② 전항의 결정은 제재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개정 2020.12.18.>

③ 위원회 사무국은 제1항의 결정서를 한국도핑방지규정 또는 프로스포츠도핑방지규정에 따른 항소권자 및 관련단체에 송부한다. <개정 2020.12.18.>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및 결정문 작성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8.8.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